

이사회규정

제정	2016.11.10	
개정	2017.12.13	2020.03.27
	2021.07.28	2022.04.14
	2022.08.10	2023.05.18
	2024.03.13	

[총 칙]

제 1 장 통칙

제 1 조 (목적)

제 2 조 (적용범위)

제 3 조 (권한)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제 4 조의 2 (사외이사 협의체)

제 5 조 (의장)

제 5 조의 2 (선임사외이사)

제 3 장 회의

제 6 조 (종류)

제 7 조 (소집권자)

제 8 조 (소집절차)

제 9 조 (결의방법)

제 10 조 (부의사항)

제 10 조의 2(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임)

제 11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제 12 조 삭 제

제 13 조 (관계인의 출석)

제 14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제 15 조 (의사록)

제 16 조 (간사)

제 17 조 (규정의 개폐)

[부 칙]

[총 칙]

제 1 장 통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클래스스(이하 '회사' 라 한다)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이사회규정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, 기타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의 수 및 이사회 구성원 수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4 조의 2 (사외이사 협의체)

-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/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사외이사 협의체를 구성, 운영한다.
- ② 사외이사 협의체는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가 주재한다.

제 5 조 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의 2 (선임사외이사)

-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이사(이하 “선임사외이사“라 함)를 사외이사들 중에서 사외이사들이 자체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선임사외이사의 임기는 선임사외이사 본인의 이사 임기로 한다.
- ③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대표하여 사외이사 협의체를 주재하고, 필요시 사외이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전달한다.
- ④ 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제 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 3 장 회의

제 6 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이사회규정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제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 및 제 398조, 제 415조의 2 제 3 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
 -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4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 - (5) 정관의 변경
 - (6) 자본의 감소
 - (7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 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- (10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이사회규정

- (11) 삭제
 - (12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 - (13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 - (14)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(정관에 의해 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 - (15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- (16) 이사의 보수
 - (17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 - (18) 법정준비금의 감액
 - (19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2. 경영에 관한 사항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 - (2) 중요한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 - (3) 중요한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 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5) 상무, 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6) 공동대표의 결정
 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- 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(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 - (10) 삭제
 - (11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- (12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 - (13) 회사의 조직 및 직원에 대한 제도의 중대한 변경
 - (14) 삭제
 - (15)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
 - (16) 삭제
 - (17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 - (18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
 - (19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 - (20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3. 재무에 관한 사항
- (1) 투자에 관한 사항
-

이사회규정

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(4) 결손의 처분
- 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6) 신주의 발행
- (7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9) 전환사채의 발행
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1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(13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4) 자기주식의 소각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3) 타회사의 임원 겸임

5. 기 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- 3. 기타 상법 제 363 조의 2, 제 393 조 제 3 항, 제 408 조의 6, 제 542 조의 13, 제 391 조의 2 및 외감법 제 8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
- 4.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
- 5. 제 14 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

제 10 조의 2(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임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 일정한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이사회규정

1.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지 1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사채발행에 대한 결정
2. 개별 재무제표 기준 최근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%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 결정
-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아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대표이사는 코스닥상장법인 공시규정에 의해 의무가 발생하는 금액 기준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성 금액 기준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 1. 감사위원회
 2. 보상위원회
 3.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
-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④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⑤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2 조 삭 제

제 13 조 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 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이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의사록)

이사회규정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 16 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7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가 한다.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이사회규정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